

# 임 원 선 거 규 정

2008년 12월 9일 제정  
2011년 12월 11일 개정  
2014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2월 18일 개정  
2018년 5월 3일 개정  
2020년 7월 15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4-H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 정관 제12조에 의거 정·부회장,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 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임원선출 20일 전 확정된 대의원으로서 명부에 등재되고, 4-H후원모금(소액지정 기부)을 월 5천원 이상, 1년 이상 납입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단, 2021년 대의원총회 선거인은 1개월 이상 납입한 자로 한다.) <본조개정 2020. 7. 15>

**제3조(선거일)**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전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피선거권)** 본부의 정회원, 후원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본조개정 2020. 7. 15>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부회원가입 후 3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 자(회비납부 등 회원의무 이행자)
8.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조(외부인사의 피선거권)** 정관 제12조 제③항 및 제13조에 따라 회장, 선출직이사(비회원) 2인, 감사 1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신망있는 외부인사로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자격제한)** 1. 본부의 이사회는 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원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

은 경우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부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3. 본부의 임원은 입후보 또는 취임 전에 본부가 필요로 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현직 임원의 경우 후보자 등록접수와 함께 선거기간 동안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차상위 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5. 3>
- 제8조(선거인명부)** ① 임원 선거인명부는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는 회원규정 제4조 1항과 4-H단체회원규정 제7조 3항 연차등록을 완료한 조직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 7. 15>
- ② 선거인은 선거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임원 후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을 선거공고일 10일전부터 임원 선거일 후 6개월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8.>
- ④ 임원 후보등록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원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인 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 선거관계 분쟁의 조정
5.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리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7. 당선인의 확정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고)** ① 위원장은 선거일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해야 할 임원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5. 등록, 접수장소
6.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7. 후보등록기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4-H신문 또는 4-H본부 홈페이지에 한다.

#### 제 4 장 후보자 등록

**제12조(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일간(토·일 및 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제13조(후보자 등록신청)**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만,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2. 기타 필요한 서류
3. 후보자 등록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조회기관에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며, 위원회는 직무 완료와 동시에 각종 선거비용을 정산하고 잔여액은 본부로 수입 처리하여 4-H활동사업에 사용한다.

1. 회장 7백만원
  2. 부회장 2백만원
  3. 감사 1백만원
- <개정 2016. 2. 18.>

④ 선거비용의 집행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8.>

**제14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심사하고 자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고 등록부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후에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즉시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③ 등록,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 제15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기간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마감 익일부터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소형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 검증을 받아 배부할 수 있다.
3. 소형인쇄물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연령·경력·공약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4. 소형인쇄물의 규격은 길이 A4 크기(길이 29.7cm, 너비 21cm) 2매 이내로 한다. 단, 양면인쇄 시 1매로 한다.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3>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대의원을 호별 또는 개별 방문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외부단체의 자금 또는 선거운동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⑤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제①~④항의 행위를 발견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중지토록 경고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현저하게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권의 박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3>

### 제 5 장 투표 및 개표

####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권 행사는 회장 선거에는 1인1표로 하고, 부회장 선거에는 1인4표, 감사 선거에는 1인2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 7. 15>

#### 제18조(투표소) 투표소는 본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투표 통지표 교부) 위원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선거인에게 투표 통지표를 교부한다. 다만, 선거인이 불참시는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제20조(투·개표의 참관) ①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현황을 참관하게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 2일전까지 투·개표 참관인 2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 자격을 확인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대의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명부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후보자의 성명과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부여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22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 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②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해당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개표시기 및 장소)**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전부 모아 투표 당일에 실시한다.

**제24조(당선인의 결정)** 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동수의 표를 획득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동수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재투표 시에도 동수의 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 5. 3.>

② 선출직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제25조(후보 미등록시의 선거방법)** ① 회장 후보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 후보등록이 없을 시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후보자 각각 3인 이상 대의원들의 추천동의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출방법은 제17조의 선거방법을 적용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된 임원은 제13조 제3항 후보자 등록비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5명의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16. 2. 18.>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선출이사는 당연직이사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부감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16. 2. 18.>

**제2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임원이 임기 중 퇴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선임부회장 순으로 잔여기간 동안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당선의 통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한다.

**제29조(임기 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 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제30조(실비지급)** 후보자 등록비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기간 중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선거기록)** 위원회는 의사록, 선거록, 투표록, 개표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32조(선거관리 지침 등)** ①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